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 신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렇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더 없이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는 대부분 저소득 서민들로 해당 주택으로 최소한의 주거서비스를 향유하는 주민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근 경제침체로 인해 이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대부료의 연체률이 증가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의 경우 대부료가 1,000분의 25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1,000분의 20을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있겠습니다.

이에 최소한 국유지 점유 주거용 건물에 대한 사용료 부과 수준까지만이라도 대부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금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요컨대 개정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 요율을 현행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